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성폭력 피해자 등의 주거이전 지원 〉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705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재봉의원 등 18인
2. 발 의 일 : 2025. 12. 30.
3. 회 부 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노출로 인한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그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 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에 노출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한 주거 이전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거 이전 지원 사유에 해당 피해 유형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포함되더라도 그 범위가 중대한 위해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모두를 주거 이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범죄 피해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보호대상자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이하 ‘성폭력 등’이라 함)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주거이전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안 제20조제6항).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주거지원 등) ① ~ ⑤ (생략) ⑥ 통일부장관은 <u>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u>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제20조(주거지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u>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 또는 피해</u> ----- ----- ----- ----- ----- 1. <u>거주지 노출로 인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u> 2.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u> 가. 「 <u>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

⑦ (생 략)	<u>제1호에 따른 성폭력</u> <u>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u> <u>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u> <u>호에 따른 가정폭력</u> <u>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u> <u>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u> <u>제1호에 따른 스토킹</u>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함) 제20조제6항¹⁾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통일부가 해당 규정에 따라 2022년 이후 주거이전을 지원한 사항은 2건 있고, 2022년 이후 수해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 변경 등 4건의 주거이전을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비보호자, 주택상실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주거지원 등) ⑥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1. 1. 5.>

게 주거보호와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공동생활시설을 운영 중임.

< 북한이탈주민 주거이전 지원 사례 >

구분	대상자	위기 상황	조치 결과
신변위해 (스토킹)	손○○ (85년생, 女)	지인 북한민 스토킹으로 인한 주거이전 요구('22.2.27.)	하나재단 지원 '쉼터'(수원소재) 임시 입주조치(3.4) * 가해자 방영선이 '22.5월 사망(급성심근경색), 신변위협 상황 종료
침수피해	이○○ (71년생, 女)	'22.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자택 침수 피해	관할 지자체(영등포구) 협조, 임시주택 입주조치(대림동, 8.16.) 후 LH 장기임대주택(빌라)으로 입주('23.1월)
침수피해	김○○ (74년생, 女)	'22.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자택 침수 피해	관할 지자체(동작구) 협조, SH 장기임대주택(아파트) 입주('22.10월)
침수피해	허○○ (54년생, 女)	'22.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자택 침수 피해 (폭우 피해 당시 입원치료 중)	관할 지자체(영등포구) 협조, 단기 쉼터 입주('22.9월)
신변위해 (협박 스토킹)	정○○ (80년생, 女)	'24.3월 특수협박 피해자인 대상자는 가해자의 출소가 임박함에 따라 불안을 호소하며 서울(SH)에서 경기도(LH)로 이전을 요청	LH 및 SH와 협조, 경기도 내 공공 임대주택으로 주거 이전('24.3월)
생활고	이○○ (80년생, 男)	'24.3월 생활고를 호소하며 투신 자살 시도, 열악한 거주환경 고려 주거 이전 지원 필요	관할 지자체(영등포구)와 LH 등 협조, LH 매입임대 주택 입주('24.7월)

자료: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성폭력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지역 및 주거지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 제20조제6항의 요건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성폭력 등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주거이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범죄 피해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국내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절대다수가 여성이고 상당수가 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는 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에 비해 거주지 이전의 제약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음.

현행 제20조제6항의 당초 입법취지는 해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북한의 테러 등을 통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경우 그 피해 또는 위해의 정도가 현행 규정인 ‘거주지 노출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와 비교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성폭력 등 피해의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²⁾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³⁾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1항제4호(주거지원),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15조~제17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퇴소) 등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제3호(피해자 지원 시설) 및 제4호(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제7조에서 제7조의4까지(보호시설의 설치, 대상, 퇴소 등),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에 관한 법률」⁴⁾ 등 기존 법률에 의해서도 주거지원 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법무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운영 지원 등을 하고 있고, 성평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숙식제공, 상담, 의료,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 등 자립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 사업을 통하여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나아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통하여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를 보호하고, 주거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가 현재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성폭력 등 피해에 대한 주거지원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현행 법 규정으로도 생명·신체 등의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3호(피해자 지원 시설),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 제9조(지원시설의 업무) 등

피해 우려시 주거이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며, 스토킹 피해뿐 아니라 침수피해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 주거이전을 지원한 사례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개정안과 같이 규정시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인식개선과 우리사회 통합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법무부는 성폭력 등의 피해로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서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67

※ 참고자료

<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 제도 개요 >

□ 개 요

- 근거 : 「북한이탈주민법」 제20조
- △최초 거주지 전입 시 임대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지원(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 거주지 전입 후 공공주택 신청 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대상
 - * 임대주택은 배정은 소유권과 유사(30~50년 사용), 배정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서울 10~20평 임대주택의 경우, 약 5억~10억의 시장가치

□ 임대주택 알선

-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
- 하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임대주택 알선을 요청하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전입 전까지 주택배정 완료
 - * 배정지역의 주택 공가 확보 사정에 따라, 하나원 수료 시까지 미배정 가능성 존재
 - * 무연고청소년은 만 19세 도달 후 본인 희망 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주택 신청 가능
- 주택배정 보류 신청자는 보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주택 신청
 - * 무연고청소년은 만 24세, 간호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는 1년까지 주택지원 보류
- 2009년 8월 5일부터 보호결정된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두 채 이상의 주택알선 가능

※ 관련 규정 「북한이탈주민법」 제20조,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5조제3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 주거지원금 지원

- 주거지원금의 금액규모는 정착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호결정(세대결정) 당시 결정되며, 거주지 전입 시 임대주택 보증금만 지급
- 임대주택 보증금은 통일부에서 LH 또는 SH 등 주택관리기관에 직접 지급
- 주거지원금 중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
- 다만, 5년 이내라도 통일부 예규에 규정된 사유 발생 시 조기 지급 가능